

나주시 공고 2025-1469호

## 공시송달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(등기)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8일



- 제 목: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5. 9. 8. ~ 2025. 9. 24.(16일간)
- 공고내용

처분 대상	성명	이*범	생년월일	197*. *. 1.
	주 소	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45-**,***동****호		
처분 원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판정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재판정 불응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등록 취소 신청			
처분 내용	장애인등록 취소	처분 일자	2025. 8. 26.	
취소 대상 장애	장애유형: 뇌병변		장애정도: 심하지않은 장애	

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5. 문 의 처: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(☎061-339-8496)

## 6. 기타사항

가.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. 9. 24.(금)까지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나.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